

국회에서 의결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법률 제21525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제32조제1항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의2.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제2조(「디지털의료제품법」의 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2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3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5조(「식품위생법」의 개정)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6조(「약사법」의 개정)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는 의약품 도매상만 해당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제42조제4항제2호·제3호”를 “제42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7조(「의료기기법」의 개정)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8조의2제3항 전단 중 “제6조제1항제2호(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를 “제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경우[판매업자,”를 “경우(판매업자,”로, “제6조제1항제2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6조제1항제2호”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제6조제1항제2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2항제5호 본문 중 “제23조제6항제6호·제7호”를 “제23조제6항제6호”로 한다.

제10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개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1조(「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12조(「화장품법」의 개정)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